

# 석유산업 규제 합리화 추진방안

- 동력자원부 -

## 1. 논의의 배경

- 최근의 대내외적 여건의 변화로 경제자율화에 대한 논의가 광범위하게 추진되고 있으며, 이의 일환으로 석유산업에 대한 자율화도 논의되고 있음.
- 특히, 石油분야의 경우
  - 80년대 중반이후 국제原油價 안정 및 원화가치 상승으로 국내油價 불안요인이 크게 감소되었으며,
  - 그동안의 石油의존도 감축 및 原油비축능력 향상으로 공급의 안정성이 크게 재고된 만큼 油價를 비롯한 석유산업관련 정부규제위주 정책의 재평가 요구는 일응 설득력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.
- 최근 석유산업자율화 관련 논의
  - '88. 5월 당부의 석유산업 자율화 추진시안 발표
  - '88. 11월 한국개발연구원의 장유산업규제 개선방안 발표
  - '88. 12월 에너지경제연구원의 '89석유산업규제합리화 추진시책(안)발표

## 2. 무분별한 자율화의 문제점 인식 필요

- 안정공급에 역점을 두어 추진되어온 石油정책에 대

한 검토를 함에 있어서, 자원빈국이란 우리의 내재된 약점과 국제原油시장의 가변성에 대한 고려없이 무분별하게 자율화를 선호함은 곤란함.

- 이때까지 발표된 석유산업자율화 관련 논의들 역시 무분별한 자율화에 따른 문제점을 감안하여 점진적, 단계적 추진방안을 제시.
- 현행 정책의 긍정적인 측면
  - 독과점사상 구조하에서 부당가격 책정방지에 기여
  - 가격 조정폭, 시기 조정으로 효율적 물가관리 가능
  - 특히 유종의 저가로 산업정책 및 민생안정 대책의 원활한 수행에 기여(나프타가격 및 등·경유의 저가 유지)

## 3. 석유산업 규제합리화 추진방안

### (1) 기본방향

- 정부의 직접규제를 시장 및 가격기능을 통한 자율조정 체제로 전환
- 현실적 제약요인을 고려 점진적, 단계적 자율화 추진
- 국제석유파동등 비상시 대비를 위한 최소한의 정부 통제 기능을 유보
- 자율화 추진에 따른 부작용 극소화를 위한 보완대책 수립

(2) 油價관리 제도개선방안

1 단계	2 단계	3 단계
· 환율 연동제 (국내 유가를 환율에 연동) · 국내油價구조의 개편 · 석유유관련 세제 개편	· 국제油價 연동제 (국내석유제품 가격을 원유가 또는 국제석유제품 가격에 연동) · 소비자가격 고시 폐지	· 油價 자율화

(3) 석유산업 관리제도 개선방안

· 정유업

1 단계	2 단계	3 단계
시설개조 허가제 폐지	증설 허가제 폐지	신규참여 자유화

· 석유 유통업

1 단계	2 단계	3 단계
· 상표표시제 도입 · 주유소 거리 제한 완화	· 석유판매업 규제 완화 · 주유소 허가기준 설정 권한의 지방자치단체 위임	· 石油판매업 자율화

(4) 石油수출입 제도

1 단계	2 단계	3 단계
· 임가공원유 및 현 유원유도입 승인제 폐지 · 분기별 수입계획 신고제 폐지	· 수출추천제 폐지 · 원유도입 승인제 폐지	· 수입추천제 폐지

(5) 보완대책 및 추가 검토사항

	현행	개정	조치사항
수출추천 대상확대	石油 정제업자	석유정제업자 및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자	통합공고 개정
수입추천 대상확대	석유정제업자 석유화학업체(나프타)	석유정제업자, 대량수요처 및 정유사공급 수출업자	대상확대 인정

· 석유사업기금 제도개선

-사후정산제도에 의한 정산의 기금의 별도 부과 방안 마련

-표준정제비 방식 도입 추진

-유종별 차등기금 적용 검토

· 정부비축능력 제고

-石油소비증가에 따른 추가비축검토

-비축기능 재검토: 유사시 대비 → 수급안정 기능 제고

· 石油수송능력 개선

-石油물동량 증가에 따른 장거리 송유관 건설 추진

· 油價자율화 추진방향 정립

-유종별 자율화 방안 및 유통단계별 자율화 방안의 장단점 비교 분석

4. 향후 추진 방안

(1) 기본 방향

· 석유산업 규제합리화 추진방향을 토대로 점진적 단계적 자율화추진

-'89년중 1단계 추진 완료 방침

-충분한 의견수렴이 이루어진 사항은 즉시 실시

-추가협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선 관계전문가들로 전담기구를 구성하여 계속 검토추진

· '89하반기중 향후 자율화 추진에 필요한 법률(석유사업법) 개정 추진검토

(2) '89 주요 추진계획

· '89. 3월 나프타 가격 연동 고시제 폐지

· '89. 3월 석유류 관련 세제 개편

-'88. 12. 15. 제22차 경제차관회의에서 관제부처협의('89. 1/4분기중 정부개편안 마련)

· '89. 6월 石油 수출입 규제 완화 조치

	현 행	개 정	조 치 사 항
나프타 및 유탄기유 수출입 자유화 수출허용 요건완화	추천제 수급상 지장없고 제품간 수급 불균형시	신고제 수급상 지장이 없는 경우	통합공고 개정 수출추천 요령개정

〈참 고 1〉 기관별 석유산업자율화 방안 비교

	에너지경제연구원	한국개발연구원
석유가격 규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나프타 및 B-C油 가격자율화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고시가격체도의 부분적 완화(구체적방안 제시 없음)</li> </ul>
정제업 규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사후정산제도 폐지</li> <li>• 매출액 기준허용 이윤제도입 반대 (과점체제하의 담합 유인만제공)</li> <li>• 시설개조 및 증설규제 폐지 (단, 상압증류시설에 대한 규제만 존치)</li> <li>• 신규참입규제 존치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사후정산제도 폐지</li> <li>• 허용이윤기준 변경 (자본금 → 매출액)</li> </ul>
유통업 규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유통업허가 규제 완화(외부효과 존재로 유통업 자율화는 반대)</li> <li>• 상표표시제 도입</li> <li>• 정유사·주유소간 직거래제 인정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신규참입규제 존치(가격 자율화 후 실시 검토)</li> <li>• 유통업 허가 규제 폐지</li> <li>• 상표 표시제 도입</li> </ul>
석유수출입 규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가격 자율화와 병행 실시</li> <li>• 대규모 소비자 및 유통업자 수입 인정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수출입규제 존치(가격 자율화후 실시 검토)</li> </ul>

□ 石油圖書案内 □

The Petroleum Industry  
in Korea  
1988

— 大韓石油協會 —